|  |  |  |
| --- | --- | --- |
| **1.3.11 외국인투자 국제해운업****관리규정**2004년 2월 25일 교통운수부, 상무부 반포2014년 4월 23일 교통운수부, 상무부 《<외국인투자 국제해운업 관리규정>개정에 대한 결정》에 따라 개정**제1조** 중국 내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을 통한 외국투자자의 국제 해상운수업무 및 국제해상운수 관련 보조성 경영업무 활동에 대한 관리를 규범화하고 중외투자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국제해운조례》(이하 《해운조례》라 약칭함)와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 관련법률, 행정법규에 근거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외국투자자가 중국 내에서 국제해상 운수업무 및 국제해상운수 관련 보조성 경영업무(이하 국제해운업이라 약칭함)에 종사하는 경우 본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중화인민공화국 교통운수부와 소재지 성급 인민정부 상무주관부문은 중화인민공화국내에 투자 설립하여 국제해운업을 경영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심사와 관리를 책임진다. **제4조** 외국투자자가 이 규정에 따라 비준을 받고 아래의 형식으로 국제해운업에 투자하여 경영하는 것을 허용한다.(1) 중외합자, 중외합작기업을 설립하여 국제선박운수, 국제선박대리, 국제선박관리, 국제해상운수화물의 하역, 국제해상운수 컨테이너장과 퇴적장업무 경영 (2) 중외합자, 중외합작, 외국인독자기업을 설립하여 국제해상운수 화물의 창고보관업무 경영 (3) 중외합자, 중외합작, 외국인독자기업을 설립하여 투자자가 보유 또는 경영하는 선박에 일상 업무 서비스 제공. **제5조** 외국인투자 국제선박운수기업은 하기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1) 국제해상운수업무 경영에 필요한 선박을 가지고 있으며, 그중 반드시 중국적의 선박이 있어야 한다. (2) 운영에 투입되는 선박은 국가가 규정한 해상교통안전기술표준에 부합해야 한다. (3) 선하증권, 승차권 또는 전구간선하증권이 있어야 한다. (4) 교통운수부가 규정한 종업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고급 업무관리요원이 있어야 한다. (5) 중외합자 또는 중외합작형식으로 설립하는 경우, 외국투자자 출자비율은 49%를 초과할 수 없다. (6) 기업 이사장과 총경리는 각 투자측이 협상 후 중국 측에서 지정한다. (7) 법률, 행정법규 규정의 기타의 조건. **제6조**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여 국제선박운수업무를 경영하려면 우선 '해운조례' 및 '중화인민공화국 해운조례실시세칙'(이하 해운조례 실시세칙'이라 약칭함)에 따라 교통운수부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은 후 신청인은 국가의 외국인투자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교통운수부의 허가서류를 지참하고 소재지 성급 인민정부 상무주관부문에 본 규정 제15조 규정의 서류를 제출하며, 소재지 성급 인민정부 상무주관부문에서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심사허가 수속을 받은 후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를 취득해야 한다. 신청인은 교통운수부의 허가서류와 소재지 성급 인민정부 상무주관부문이 발급한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 등의 관련 서류를 지참하고 법에 의해 공상행정관리기관에서 공상등기를 하고 영업허가증을 수령해야 한다. 외국인투자 국제선박운수기업이 법에 의해 설립된 후 신청인은 공상행정관리기관이 발급한 영업허가증을 지참하고 교통운수부에서 '국제선박운수 경영허가증'을 신청하며, 허가증을 취득한 후 국제선박운수 경영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제7조** 외국인투자 국제선박대리기업을 설립하려면 하기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1) 고급업무관리요원 중 최소한 2명이 3년 이상의 국제해상운수 경영활동 경력이 있어야 한다. 고급업무관리요원이란 중급 또는 중급이상의 직함을 가지고 있고 국제해운기업 또는 국제해운 보조기업에서 경리 이상의 직무를 담당한 중국공민을 말한다. (2) 고정된 영업장소와 필요한 영업시설이 있어야 하며 항구와 세관 등의 부문과 전자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3) 중외합자 또는 중외합작기업 형식으로 설립할 경우, 외국투자자 출자비율은 49%를 초과할 수 없다. (4) 법률, 행정법규 규정의 기타의 조건. **제8조**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여 국제선박대리업무를 경영하려면 우선 '해운조례' 및 '해운조례 실시세칙'의 규정에 근거하여 교통운수부에 신청해야 하며, 교통운수부의 허가를 받은 후 신청인은 국가의 외국인투자 법률, 행정법규의 관련 규정에 따라 교통운수부의 허가서류를 지참하고 소재지 성급 인민정부 상무주관부문에 본 규정 제15조 규정의 서류를 제출하며, 소재지 성급 인민정부 상무주관부문에서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심사허가 수속을 밟은 후 '외국인투자기업 비준증서'를 취득해야 한다. 신청인은 교통운수부의 허가서류와 소재지 성급 인민정부 상무주관부문이 발급한 '외국인투자기업 비준증서' 등의 관련 서류를 지참하고 법에 의해 공상행정관리기관에서 공상등기를 하고 영업허가증을 수령해야 한다. 외국인투자 국제선박대리기업이 법에 의해 설립된 이후 신청인은 마땅히 공상행정관리기관이 발급한 영업허가증을 지참하고 교통운수부에서 '국제선박대리 경영자격등기증'을 수령해야 하며 자격등기증을 취득한 후 국제선박대리경영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제9조** 외국인투자 국제선박 관리기업을 설립하려면 하기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고급업무관리요원 중 최소한 2명이 3년 이상의 국제해상운수 경영활동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관리하는 선박종류와 항행구역에 필요한 선장, 기관장 적임자격증명을 소지한 요원이 있어야 한다. (3) 국제선박관리업무에 필요한 설비, 시설이 있어야 한다. **제10조**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여 국제선박관리업무를 경영하려면 '해운조례' 및 '해운조례 실시세칙'의 규정에 따라 교통운수부에 신청을 제출해야 하며, 교통운수부의 허가를 받은 후 신청인은 허가서류를 지참하고 아울러 본 규정 제15조 규정의 서류를 제출, 국가의 외국인투자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기업소재지 성급인민정부 상무주관부문에서 '외국인투자기업 비준증서'를 수령해야 한다. 외국인투자 국제선박관리기업이 법에 의해 설립된 후 신청인은 공상행정관리기관이 발급한 영업허가증을 지참하고 기업소재지 성급 인민정부 교통운수 주관부문에서 '국제해운보조업 경영자격등기증'을 신청해야 하며, 등기증서를 취득한 후 국제선박관리 경영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제11조**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여 국제해상운수 컨테이터장과 퇴적장업무, 국제해상운수화물의 창고보관업무를 경영하려면 '해운조례' 및 '해운조례 실시세칙'의 규정에 따라 교통운수부에 신청을 제출해야 하며, 교통운수부의 허가를 받은 후 신청인은 교통운수부의 허가서류를 지참하고 아울러 본 규정 제15조 규정의 자료를 제출, 국가의 외국인투자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기업소재지 성급인민정부 상무주관부문에서 '외국인투자기업 비준증서'를 수령해야 한다. 외국인투자 국제해상운수 컨테이너장과 퇴적장업무에 종사하는 기업, 국제해상운수 화물 창고보관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이 설립된 후, 신청인은 공상행정관리기관이 발급한 영업허가증을 지참하고 기업소재지 성급 인민정부 교통운수주관부문에서 '국제해운 보조업 경영자격등기증'을 신청해야 하며, 등기증서를 취득한 후에야 관련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 국제해상운수 화물 하역기업은 국가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제12조** 이미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이 국제해상운수 또는 국제해상운수 보조업무의 경영을 추가하려면 본 규정 중 관련 외국인투자 국제해운기업 설립절차에 따라 필요한 수속을 해야 한다. 이미 설립된 외국인투자 국제해운기업이 분지기구를 설립하려면 외국인투자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과 '해운조례' 및 '해운조례 실시세칙'의 관련 규정에 의해 교통운수부와 소재지 성급 인민정부 상무주관부문에서 필요한 수속을 해야 한다. 이미 설립된 외국인투자 국제해운기업의 합영계약, 계약정관 중의 출자, 지분구조, 경영범위 등의 중요내용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외국인투자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의해 소재지 성급 인민정부 상무주관부문에서 필요한 수속을 해야 한다. '해운조례 실시세칙' 제21조 규정 사항을 변경하려면 마땅히 교통운수부에 등록해야 한다. **제13조** 외국 해상운수회사는 중외합자, 중외합작, 외국인독자기업을 설립하여 투자자가 보유 또는 경영하는 선박에 화물의 청부, 선하증권의 대리서명, 운임의 대리결제, 서비스계약의 대리서명 등의 일상 업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 신청 및 설립절차는 교통운수부와 소재지 성급 인민정부 상무주관부문가 연합 발표한 외국인독자 선박회사 심사허가 관리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14조** 중국 내 외국인투자기업이 무선박운수 업무를 경영하려면 '해운조례' 및 '해운조례 실시세칙'의 규정에 따라 교통운수부에 등기 신청을 제출하여 '무선박 운수업무 경영자격등기증’을 취득해야 하며, 아울러 외국인투자 관련 법률, 행정법규 규정에 따라 소재지 성급 인민정부 상무주관부문에서 심사허가 수속을 해야 한다. **제15조** 신청인이 교통운수부에 신청을 제출시에는 '해운조례' 및 '해운조례 실시세칙'에서 규정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소재지 성급 인민정부 상무주관부문에 신청을 제출 시에는 심사허가 기관에 하기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서 (2) 타당성 연구보고서 (3) 합영계약과 합영회사 정관(독자기업은 정관만 제출) (4) 투자자의 등록등기증명서류 및 신용자격 증명서류 (5) 설립하고자 하는 기업의 이사장과 총경리의 신분증명 (6) 법률, 행정법규가 요하는 기타의 서류. **제16조** 중국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와 대만지역의 투자자가 중국의 기타 성, 자치구 및 직할시에서 국제해운 및 국제해운보조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본 규정을 참조한다. **제17조** 국무원이 비준한 《내지 및 홍콩간 보다 긴밀한 경제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 《내지와 마카오간 보다 긴밀한 경제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 및 보충협의, 그리고 <해협양안 해운협의>, <해협양안 경제협력 기본협의>, <해협양안 서비스무역협의> 및 관련 보충협의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준한다. **제18조** 본 규정은 교통운수부와 상무부가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19조** 본 규정은 2004년 6월1일부터 시행한다. |  | **外商投资国际海运业****管理规定**2004年2月25日交通部、商务部发布根据；2014年4月23日交通运输部、商务部《关于修改〈外商投资国际海运业管理规定〉的决定》修正 　 **第一条** 为规范对外商在中国境内设立外商投资企业从事国际海上运输业务以及与国际海上运输相关的辅助性经营业务的管理，保护中外投资者的合法权益，根据《中华人民共和国国际海运条例》（以下简称《海运条例》）和中华人民共和国外商投资的有关法律、行政法规，制定本规定。  　 **第二条** 外商在中国境内投资经营国际海上运输业务以及与国际海上运输相关的辅助性经营业务（以下简称国际海运业），适用本规定。  **第三条** 中华人民共和国交通运输部和商务部及其授权的部门负责外商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投资设立经营国际海运业的外商投资企业的审批和管理工作。  　 **第四条** 依照本规定经批准，允许外商采用以下形式投资经营国际海运业：  　（一）设立中外合资、中外合作企业经营国际船舶运输、国际船舶代理、国际船舶管理、国际海运货物装卸、国际海运集装箱站和堆场业务；  　（二）设立中外合资、中外合作、外商独资企业经营国际海运货物仓储业务；  　（三）设立中外合资、中外合作、外商独资企业为投资者拥有或者经营的船舶提供日常业务服务。  **第五条** 设立外商投资国际船舶运输企业，需符合如下条件：  　（一）有与经营国际海上运输业务相适应的船舶，其中必须有中国籍船舶；  　（二）投入运营的船舶符合国家规定的海上交通安全技术标准；  　（三）有提单、客票或者多式联运单证；  　（四）有具备交通运输部规定的从业资格的高级业务管理人员；  　（五）以中外合资或中外合作企业形式设立，外商的出资比例不得超过49%；  　（六）企业的董事长和总经理，由投资各方协商后由中方指定；  　（七）法律、行政法规规定的其他条件。 **第六条** 设立外商投资企业经营国际船舶运输业务，应当首先根据《海运条例》及《中华人民共和国海运条例实施细则》（以下简称《海运条例实施细则》）的规定向交通运输部提出申请，经交通运输部许可后，申请人应根据国家外商投资法律、行政法规的规定，凭交通运输部的许可文件向所在地省级人民政府商务主管部门提交本规定第十五条规定的文件，到所在地省级人民政府商务主管部门办理外商投资企业的设立审批手续，取得《外商投资企业批准证书》。  　申请人应当持交通运输部的许可文件和所在地省级人民政府商务主管部门颁发的《外商投资企业批准证书》等有关文件，依法向工商行政管理机关办理工商登记，领取营业执照。  　外商投资国际船舶运输企业依法设立后，申请人应当持工商行政管理机关颁发的营业执照向交通运输部申领《国际船舶运输经营许可证》，取得许可证书后方可从事国际船舶运输经营活动。  　**第七条** 设立外商投资国际船舶代理企业，需符合如下条件： 　　（一） 高级业务管理人员中至少2人具有3年以上从事国际海上运输经营活动的经历。高级业务管理人员是指具有中级或中级以上职称、在国际海运企业或者国际海运辅助企业任部门经理以上职务的中国公民；  　 （二）有固定的营业场所和必要的营业设施，包括具有同港口和海关等部门进行电子数据交换的能力；  　 （三）以中外合资或中外合作企业形式设立，外商出资比例不得超过49%；  　(四）法律、行政法规规定的其他条件。 　 **第八条** 设立外商投资企业经营国际船舶代理业务，应当首先根据《海运条例》及《海运条例实施细则》的规定向交通运输部提出申请，经交通运输部许可后，申请人应根据国家外商投资法律、行政法规的规定，凭交通运输部的许可文件向所在地省级人民政府商务主管部门提交本规定第十五条规定的文件，到所在地省级人民政府商务主管部门办理外商投资企业的设立审批手续，取得《外商投资企业批准证书》。  　 申请人应当持交通运输部的许可文件和所在地省级人民政府商务主管部门颁发的《外商投资企业批准证书》等有关文件，依法向工商行政管理机关办理工商登记，领取营业执照。  　 外商投资国际船舶代理企业依法设立后，申请人应当持工商行政管理机关颁发的营业执照向交通运输部申领《国际船舶代理经营资格登记证》，取得资格登记证后方可从事国际船舶代理经营活动。  　 **第九条** 设立外商投资国际船舶管理企业，需具备下列条件：  　（一）高级业务管理人员中至少2人具有3年以上从事国际海上运输经营活动的经历；  　（二）有持有与所管理船舶种类和航区相适应的船长、轮机长适任证书的人员；  　（三）有与国际船舶管理业务相适应的设备、设施。  　 **第十条** 设立外商投资企业经营国际船舶管理业务，应当根据《海运条例》及《海运条例实施细则》的规定向交通运输部提出申请，经交通运输部许可后，申请人凭交通运输部的许可文件并提交本规定第十五条规定的材料，根据国家有关外商投资的法律、行政法规的规定向企业所在地省级人民政府商务主管部门办理《外商投资企业批准证书》。  　外商投资国际船舶管理企业依法设立后，申请人应当持工商行政管理机关颁发的营业执照向企业所在地的省级人民政府交通运输主管部门申领《国际海运辅助业经营资格登记证》，取得登记证书后方可从事国际船舶管理经营活动。  　**第十一条** 设立外商投资企业经营国际海运集装箱站和堆场业务、国际海运货物仓储，应当根据《海运条例》及《海运条例实施细则》的规定向交通运输部提出申请，经交通运输部许可后，申请人凭交通运输部的许可文件并提交本规定第十五条规定的材料，根据国家有关外商投资的法律、行政法规的规定向企业所在地省级人民政府商务主管部门办理《外商投资企业批准证书》。  　外商投资国际海运集装箱站和堆场企业、国际海运货物仓储企业依法设立后，申请人应当持工商行政管理机关颁发的营业执照向企业所在地的省级人民政府交通运输主管部门申领《国际海运辅助业经营资格登记证》，取得登记证书后方可从事相关业务。 　 外商投资设立国际海运货物装卸企业，依照国家有关规定办理。  　 **第十二条** 对已经设立的外商投资企业申请增加经营国际海运或国际海运辅助性业务，应当按照本规定中设立相关外商投资国际海运企业的程序办理相应手续。  　 已经设立的外商投资国际海运企业设立分支机构，应当按照有关外商投资法律、行政法规的规定和《海运条例》及《海运条例实施细则》的规定分别到交通运输部和所在地省级人民政府商务主管部门办理相应手续。  　 已经设立的外商投资国际海运企业的合营合同、公司章程中有关出资、股权结构、经营范围等重要内容进行变更的，应当按照有关外商投资法律、行政法规的规定到所在地省级人民政府商务主管部门办理相关手续。变更《海运条例实施细则》第二十一条规定事项的，应当向交通运输部备案。  　 **第十三条** 外国航运公司可以设立中外合资、中外合作、外商独资企业，为投资者拥有或者经营的船舶提供承揽货物、代签提单、代结运费、代签服务合同等日常业务服务，其申请设立程序依照交通运输部与商务部联合发布的外商独资船务公司审批管理的有关规定办理。  　 **第十四条** 在中国境内的外商投资企业经营无船承运业务，应依照《海运条例》及《海运条例实施细则》的规定，向交通运输部申请登记取得《无船承运业务经营资格登记证》，并依照外商投资的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到所在地省级人民政府商务主管部门办理审批手续。  **第十五条** 申请人向交通运输部提出申请，应当提交《海运条例》及《海运条例实施细则》规定的材料；向所在地省级人民政府商务主管部门提出申请的，应向审批机关提交如下材料：  　 （一）申请书；  　 （二）可行性研究报告；  　 （三）合营合同和合营公司章程（独资企业只报送章程）；  　 （四）投资者注册登记证明文件及资信证明文件；  　 （五）拟设立企业董事长和总经理的身份证明；  　 （六）法律、行政法规要求的其他文件。　　  　 **第十六条** 中国香港特别行政区、澳门特别行政区和台湾地区的投资者在中国其他省、自治区和直辖市投资设立国际海运及其国际海运辅助企业，参照本规定办理。  　 **第十七条** 经国务院批准的《内地与香港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内地与澳门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及其补充协议，以及《海峡两岸海运协议》、《海峡两岸经济合作框架协议》、《海峡两岸服务贸易协议》及相关补充协议另有规定的，从其规定。  　 **第十八条** 本规定由交通运输部和商务部负责解释。  　 **第十九条** 本规定自2004年6月1日起施行。　　 |